

2017. 3. 20. 10:00

제25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임동화 · 이재철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 지자체 협업형 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 건립을 유치함에 있어 우리군은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대구시·근로복지공단·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부담하여 어린이집 건립후, 우리군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이용함으로 기업체 근로자 보육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문양역 인근 마천산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함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마을내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았으며 방문객과 주민들간의 마찰도 생기고, 긴급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 등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요구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5. 주요골자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 어린이집 개요

- 시 설 명 : 비슬어린이집(가칭)
- 위 치 :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번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847.34㎡, 건축연면적 856.18㎡(지상3층)
- 건축주(대표기업) : 대동금속(주)
- 참여기업 : 대동금속 외 20개사 (의무사업장 3개사 포함)
- 시설건립비 : 2,060백만원

(단위:천원)

총 소요액	대구시	근로복지공단	기업체
2,060,000	300,000	1,500,000	260,000

- 운영비용 부담 : 기업체 부담
- 의무 운영기간 : 7년

- 부지제공 및 건축물 소유권 등

- 부 지 제 공 : 달성군 소유 부지 무상 사용
- 건축물 설치비 : 대구시·근로복지공단·기업체가 사업비 공동부담
- 건축물 소유권 등 : 준공과 동시에 달성군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
- 건축물·부지 무상사용 수익대상 : 대동금속 외 20개사
- 공공청사용지 무상사용 및 건물 기부채납 내역

구 분	토 지				건축 연면적 (기부채납 대상)	무상사용 수익대상
	위 치	소유자	면적(㎡)	무상사용 면적(부지)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유가면 봉리 600	달성군	1,926㎡ (583평)	847.34㎡ (256평)	856.18㎡ (지상3층)	대동금속 외 20개사 (컨소시엄 참여 사업장)

○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다사읍 문양리 산18-2, 343번지(2필지)
- 기 간 : 2017. 4. ~ 2017. 12.
- 면 적 : 5,120㎡(100면)
- 사업비 : 750백만원(토지매입비 440, 공사비 310)

- 붙 임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1부. 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9 (31)	72,679.22	47,233,917	2 (2)	5,976.18	2,074,706	11 (33)	78,655.4	49,308,623
	1.매입	토지	4 (31)	58,080	14,157,988	1 (2)	5,120	14,706	5 (33)	63,200	14,172,694
		건물	2	1,126.22	75,929				2	1,126.22	75,929
	2.교환										
	3.기타	토지									
		건물	3	13,473	33,000,000	1	856.18	2,060,000	4	14,329.18	35,060,000
처 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답	채	다사읍	매곡리	919-1	2,430 (연면적)	7,600,000,000 (사업비)	2018.	노인복지관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6.12. 의회 의결
	전	채	다사읍	매곡리	919-2							
2	채	채	유가면	상리	410B/2L	45,184	13,103,360,000	2017.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	LH공사	"
3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7	208	20,675,200	2017	회원명곡 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화원읍 천내리 884	성순옥	"
4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8	1,243	123,554,200			수성구 황금동 368	박영숙	
5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9	1,124	111,725,600			화원읍 천내리 766	김종렬	
6	대	대	화원읍	명곡리	20-1	972	156,103,200					
7	목	목	화원읍	명곡리	20-2	754	74,193,600					
8	답	답	화원읍	명곡리	21	175	14,875,000	2017				"
9	답	답	화원읍	명곡리	24-2	555	47,175,000			화원읍 천내리 783	김윤희	
10	전	전	화원읍	명곡리	28	1,752	148,920,000					
11 (건물)	대	대	화원읍	명곡리	20-1 20-2	987.6 987.62	3,029,16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주 소	성 명	
12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0-2	34	1,689,800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구지면 도동리 69	김길동	2016.12. 의회 의결
13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1-1	71	3,528,700			구지면 도동리 171	김태욱	
14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2-1	52	2,584,4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1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2-2	36	1,789,2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16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	155	4,340,0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17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3-1	176	8,747,200			구지면 도동리 56	김영식	
1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2	244	12,126,8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19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4-1	27	1,341,9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0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5-1	154	7,653,8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한용	
2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5-2	267	13,269,9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22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6-1	166	8,250,2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3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6-2	96	4,771,2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주 소	성 명	
24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314	25,496,800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2016.12. 의회 의결
2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54-1	979	48,656,3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26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165	11,484,0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7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1,471	102,675,8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28	임	임	구지면	도동리	58	602	927,08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29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463	32,965,600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화	
30	임	임	구지면	도동리	60	347	405,990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화	
3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71	107	8,688,4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32	대	대	구지면	도동리	71-3	65	2,138,5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동	
33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54-1 71	81.4 (연면적)	38,500,000 (개별주택가격)			구지면 도동리 54	김희석	
34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1 71	32 (연면적)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5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25.2	34,400,000 (개별주택가격)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화	2016.12. 의회 의결	
36	답	답	현풍면	하리	250-4	122	53,875,200	2017	보건소 이전·신축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210	윤점준		
37 (건물)	대	대	현풍면	하리	253-2	10,383 (연면적)	23,400,000,000 (공사비)	2018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답	답	현풍면	하리	250-4								
38 (건물)	대	대	옥포면	교항리	2961	660 (연면적)	2,100,000,000 (사업비)	2017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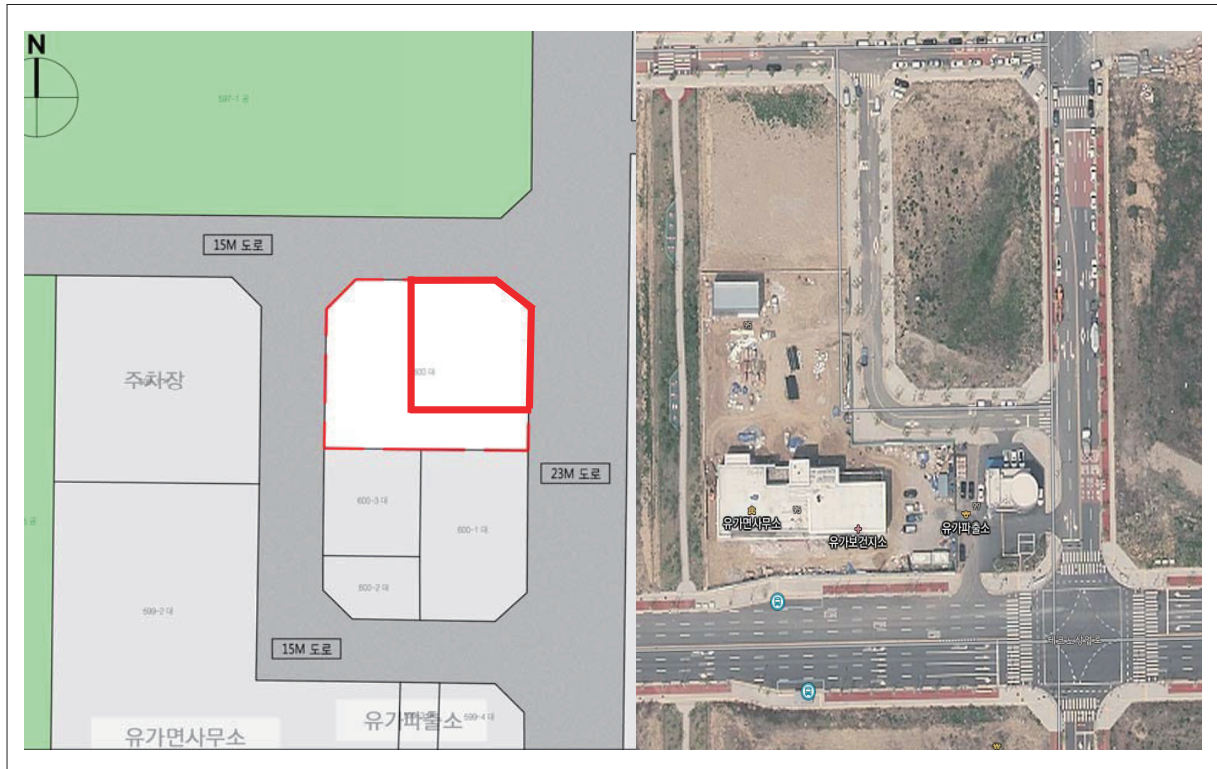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대	대	유가면	봉리	600	847.34	856.18 (건축연면적)	2017년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 (기부채납)	대동금속 외 20개사 (기부채납자)		
2	임	임	다사읍	문양리	산18-2	4,135	4,135	11,288,550	마을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 325동902호	정병규	
3	전	전	다사읍	문양리	343	985	985	3,417,950				

위 치 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0번지



위 치 도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산18-2번지 외 1필지



II. 검토의견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함에 있어 유가 봉리 600번지에 대구시와 근로복지공단, 우리군내 기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건립하고 운영경비는 기업체부담으로 운영하고 건축물은 달성군에 기부채납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대지면적 847.34㎡, 건축연면적 856.18㎡ (지상3층) 건축주(대표기업)은 대동금속(주)이며 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건립비는 2,060백만원입니다.

달성산업단지 공단지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보육을 위한 책임과 보육수급에 따른 어린이집 확보의무가 있을 뿐아니라 달성공단에도 직장어린이집이 마련되면 21개 기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보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사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문양역은 대구시와 연결된 지하철 2호선의 종착역으로 마천산이 위치하고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이나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으로 주민생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방문객과 지역주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문양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위치는 다사읍 문양리 산 18-2번지 외 1필이며
취득면적은 5,120㎡, 주차면수는 100면, 총사업비 7억5천만원입니다.

다사읍은 대구시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군민들이 역세권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가 환승에 필요한 공영주차공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을 위주로 우리지역을 찾는 대구시민과 시내를 생활권으로 하는 군민 모두에게 교통편의를 위해 기회가 마련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 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0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안 제5조)
- 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안 제6조, 안 제7조)
- 다. 고용기업 지원 및 경비보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포상(안 제10조, 안 제11조)

5. 관계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제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지원대상(안 제3조),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안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안 제6조), 고용촉진(안 제7조), 고용기업 지원(안 제8조), 경비보조(안 제9조), 포상(안 제11조) 등입니다.
-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고용 의무비율 확대, 직업지도, 직업 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후 적응지도를 통하여 직업생활에 대한 자립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중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3. .

발의의원 : 하중환 의원, 구자학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안 제5조)
- 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안 제6조, 안 제7조)
- 다. 고용기업 지원 및 경비보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포상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이 선순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

2. 통상의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내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0일

2. 제 출 자 : 김상영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군수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마련 (안 제4조)
- 나.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감시활동과 진화활동 등에 대한 재정 및 물품 지원 (안 제5조)
- 다. 산불방지 활동에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5.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달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 마련(안 제4조),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감시활동과 진화활동 등에 대한 재정 및 물품 지원(안 제5조), 산불방지 활동에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등 9개 조문입니다.
- 본 제정안은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토보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화활동 참여자에 대한 격려와 산불방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자긍심 고취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3. .

발의의원 : 김상영 의원, 김성택 의원

1. 제안이유

-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수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안 제4조)
- 나.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감시활동과 진화활동 등에 대한 재정 및 물품 지원(안 제5조)
- 다. 산불방지 활동에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불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달성군의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달성군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 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 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0일

2. 제 출 자 : 신영희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 홍보 및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수거, 운반,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안 제4조, 안 제5조), 불용의약품의 수거,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등 입니다.
- 본 제정안은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3. .

발의의원 : 신영희 의원, 채명지 의원

1. 제안이유

-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교육홍보, 수거된 폐의약품의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다. 불용의약품의 수거, 운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이하 “수집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등에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군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장소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군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군수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0일
2. 제 출 자 : 신영희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 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5.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의3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하는 등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본 제정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등을 이용하여 모유를 모으거나 모유를 냉장 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임산부 등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산부 등을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이동형 시설”이란 이동하여 다니는 곳에서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모유수유실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사(군청사,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 등) 및 군 산하 공공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그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군수는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운영을 향상 및 모유수유 실적의 증진을 위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모유수유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유수유 및 출산율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및 권장
2.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3. 개정이유

○ 다사, 옥포, 현풍, 유가, 구지 등 주택, 빌라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변동 읍·면의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감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리 · 반 조정 : **9개 리 166반 신설**(286리⇒295리, 2,297반⇒2,463반)

읍 면	기 존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다 사	세 천 1 리	10	세 천 1 리	10	3	21	
			세 천 4 리 (삼정그린코아 1단지)	8			
			세 천 5 리 (삼정그린코아 2단지)	6			
			세 천 6 리 (현대썬앤빌 대구)	7			
옥 포	본 리 1 리	17	본 리 1 리	17	3	49	
			본 리 5 리 (미진이지비아)	20			
	교 향 2 리	4	교 향 2 리	4			
			교 향 4 리 (이진캐스빌)	9			

			교 향 5 리 (대성베르힐)	19			
	김 흥 2 리	5	김 흥 2 리	6			세대수 증가에 따른 반 신설
현 풍	중 1 리	12	중 1 리	12	2	26	
			중 11 리 (일동미라주)	11			
			중 12 리 (천년나무 3단지)	15			
유 가	봉 1 리	3	봉 1 리	3	1	32	
			봉 9 리 (제일풍경채 센트럴)	32			
구 지	응 암 2 리	5	응 암 2 리	5	1	23	
			응 암 5 리 (과학마을청아람)	23			
	응 암 3 리	1	폐 지	0	▼1	▼1	국가산단 편입으로 자연부락 폐지
			응 암 3 리 (반도유보라)	18	1	18	신설
	화 산 1 리	4	화 산 리	4	▼1	▼2	
	화 산 2 리	2					

나. 이장 정수 **증 11**

- 1) 다사읍 :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 2) 옥포면 : 본리5리, 교향4리, 교향5리
- 3) 현풍면 : 중11리, 중12리
- 4) 유가면 : 봉9리
- 5) 구지면 : 응암3리(아파트단지 신설), 응암5리

다. 이장 정수 **감 2**

- 1) 구지면 : 응암3리(자연부락 폐지, 응암2리로 편입), 화산2리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다사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등 빌라 및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9개리 166반을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사읍 3개리와 21개반 신설, 옥포면 3개리와 49개반 신설, 현풍면 2개리 26개반 신설, 구지면 2개리와 3개반 폐지 및 2개리와 41개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계	95	295	295
화원읍	천내리	16	천내1리 천내2리 천내3리 천내4리 천내5리 천내6리 천내7리 천내8리 천내9리 천내10리 천내11리 천내12리 천내13리 천내14리 천내15리 천내16리
	구라리	9	구라1리 구라2리 구라3리 구라4리 구라5리 구라6리 구라7리 구라8리 구라9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화원읍	성산리	6	성산1리 성산2리 성산3리 성산4리 성산5리 성산6리
	설화리	2	설화1리 설화2리
	명곡리	7	명곡1리 명곡2리 명곡3리 명곡4리 명곡5리 명곡6리 명곡7리
	본리리	6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본리6리
화원읍 소계	6	46	46
논공읍	노이리	2	노이1리 노이2리
	금포리	3	금포1리 금포2리 금포3리
	삼리리	2	삼리1리 삼리2리
	위천리	1	위천리
	상리	1	상리
	하리	1	하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남 리	9	남1리 남2리 남3리 남4리 남5리 남6리 남7리 남8리 남9리
	북 리	7	북1리 북2리 북3리 북4리 북5리 북6리 북7리
	본리리	-	
논공읍 소계	9	26	26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2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세천리	6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세천4리 세천5리 세천6리
	죽곡리	11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매곡리	18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55	55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가창면	용계리	7	용계1리 용계2리 용계3리 용계4리 용계5리 용계6리 용계7리
	오 리	2	오1리 오2리
	정대리	2	정대1리 정대2리
	냉천리	2	냉천1리 냉천2리
	행정리	2	행정1리 행정2리
	상원리	2	상원1리 상원2리
	단산리	1	단산리
	대일리	2	대일1리 대일2리
	주 리	2	주1리 주2리
	옥분리	1	옥분리
	삼산리	1	삼산리
	우록리	2	우록1리 우록2리
가창면 소계	12	26	26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하빈면	하산리	2	하산1리 하산2리
	묘리	2	묘1리 묘2리
	기곡리	2	기곡1리 기곡2리
	대평리	2	대평1리 대평2리
	무등리	2	무등1리 무등2리
	현내리	3	현내1리 현내2리 현내3리
	감문리	2	감문1리 감문2리
	동곡리	2	동곡1리 동곡2리
	봉촌리	2	봉촌1리 봉촌2리
하빈면 소계	9	19	19
옥포면	본리리	5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5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4리 교항5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면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면 소계	9	24	24
현풍면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현풍면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신기리	1	신기리
현풍면 소계	11	36	36
유가면	읍 리	1	읍 리
	양 리	2	양1리 양2리
	용 리	2	용2리 용3리
	봉 리	11	봉1리 봉2리 봉3리 봉6리 봉7리 봉8리 봉9리 봉10리 봉11리 봉12리 봉13리
	쌍계리	3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초곡리	1	초곡리
	상 리	1	상 리
	금 리	1	금 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유가면 소계	13	34	34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응암리	5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화산리	1	화산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29	29

【별표3】

리 반 의 명 칭 및 관 할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 사 읍	세천4리 <신설>	제 1 반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1동 201~2201, 302~2202
		2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2동 201~2301, 302~2302
		3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2동 203~2003, 204~2004
		4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3동 201~1901, 302~1902
		5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4동 201~2201, 302~2202
		6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4동 203~2003, 204~2004
		7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5동 201~2101, 302~2102
		8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5동 203~2203, 304~2204
	세천5리 <신설>	제 1 반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1동 201~2001, 302~2202
		2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1동 203~2203, 304~2204
		3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1동 205~2205, 206~2206
		4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2동 201~1901, 302~1902
		5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3동 201~2401, 302~2502
		6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3동 303~2203, 204~1904, 205~1405

읍 면	리	반	구 역
다 사 읍	세천6리 <신설>	제 1 반	1587(현대썬앤빌대구) 101동 201~3301, 202~3302
		2	1587(현대썬앤빌대구) 101동 203~3203, 204~3204
		3	1587(현대썬앤빌대구) 102동 201~1201, 202~1202, 203~1603
		4	1587(현대썬앤빌대구) 102동 204~2004, 205~2005
		5	1587(현대썬앤빌대구) 103동 101~1501, 102~1502
		6	1587(현대썬앤빌대구) 103동 103~1003, 104~1404
		7	1587(현대썬앤빌대구) 103동 105~1605, 106~1206
옥 포 면	본리5리 <신설>	제 1 반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1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004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면	본리5리 <신설>	제 11 반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101~3302
		1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1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1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2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004
	교항4리 <신설>	제 1 반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1동 101~1305
		2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2동 101~1505
		3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3동 101~1505
		4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4동 101~1602
		5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5동 101~1302
		6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6동 101~1605
		7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7동 101~1605
		8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8동 101~1405
		9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9동 201~1405

읍 면	리	반	구 역
옥 포 면	교항5리 <신설>	제 1 반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1동 101~1804
		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2동 101~1804
		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3동 101~1804
		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4동 101~1304
		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5동 101~1304
		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6동 101~1404
		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7동 101~1504
		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8동 101~1304
		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9동 101~1404
		10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0동 101~1702
		11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1동 201~1804
		1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2동 101~1604
		1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3동 101~1504
		1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4동 201~1802
		1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5동 201~1504
		1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6동 201~1804
		1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7동 201~1804
		1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8동 201~1602
		1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9동 201~1404
	김홍2리	제 1 반	791 ~ 779
		2	709 ~ 750
		3	748 ~ 766
		4	717 ~ 729
		5	445 ~ 470
		6	542 ~ 687
		<신설>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중11리 <신설>	제 1 반	485(일동미라주) 101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2	485(일동미라주) 102동 201~1801, 2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3	485(일동미라주) 103동 201~1801, 202~1802, 203~1803, 204~1804, 205~1805
		4	485(일동미라주) 104동 101~1801, 1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5	485(일동미라주) 105동 201~2101, 102~2102, 103~2103
		6	485(일동미라주) 105동 204~2104, 105~2105호
		7	485(일동미라주) 106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804, 105~1805
		8	485(일동미라주) 107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9	485(일동미라주) 108동 101~1801, 102~1802, 103~1803, 204~1504, 205~1505
		10	485(일동미라주) 109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11	485(일동미라주) 110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중12리	제 1 반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1~1701, 102~1702, 103~1703
		2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4~1704, 105~1705, 106~1706
		3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4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11~2111, 112~2112, 113~2113
		5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14~2114, 115~2115, 116~2116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중12리 <신설>	제 6 반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7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8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9~1709, 110~1710, 111~1711, 112~1712
		9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4~2104, 105~2105, 106~2106
		11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12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311~1711, 112~1712, 113~1713, 114~1714
		13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4~1704
		14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105~1705, 106~1706, 107~1707, 308~1708
		15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209~1709, 210~1710, 211~1711, 212~1712
유 가 면	봉9리 <신설>	제 1 반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1동 101~1001, 102~1002, 103~1003
		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1동 1101~2101, 1102~2102, 1103~2103
		3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2동 101~1101, 102~1102, 103~1103
		4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2동 1201~2201, 1202~2202, 1203~2203
		5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3동 101~1101, 102~1102, 103~1103
		6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3동 1201~2201, 1202~2202, 1203~2203

읍 면	리	반	구 역
유 가 면	봉9리 <신설>	제 7 반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4동 101~1101, 102~1102, 103~1103
		8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4동 1201~2201, 1202~2202, 1203~2003
		9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5동 201~1801, 202~1802
		10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5동 203~1803, 205~1805
		11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6동 201~1601, 202~1602
		1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6동 103~1603, 105~1605
		13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7동 101~1601, 102~1602
		14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7동 103~1603, 105~1605
		15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8동 101~1601, 102~1602
		16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8동 103~1603, 105~1605
		17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9동 201~1801, 202~1802
		18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9동 203~1803, 205~1805
		19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0동 101~1601, 102~1602
		20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0동 103~1603, 105~1605
		21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1동 101~1601, 102~1602
		2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1동 103~1603, 105~1605

읍 면	리	반	구 역
유 가 면	봉9리 <신설>	제23반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2동 101~1601, 102~1602
		24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2동 103~1603, 105~1605
		25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3동 101~1001, 102~1002, 103~1003
		26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3동 1101~2001, 1102~2102, 1103~2103
		27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4동 101~1101, 102~1102, 103~1103
		28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4동 1201~2001, 1202~2202, 1203~2203
		29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5동 101~1101, 102~1102, 303~1103
		30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5동 1201~2001, 1202~2202, 1203~2203
		31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6동 101~1101, 102~1102, 103~1103
		3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6동 1201~2001, 1202~2202, 1203~2203
구 지 면	응암2리	제 1 반	356~372
		2	372~392
		3	392~467
		4	467~605
		5	605~1217(1178, 1199, 1210제외)
		<변경>	

읍 면	리	반	구 역
구 지 면	응암3리 <신설>	제 1 반	1199(반도유보라) 101동 201~1801, 202~2302, 203~2503
		2	1199(반도유보라) 101동 204~2504, 205~2305
		3	1199(반도유보라) 102동 201~2501, 202~2502
		4	1199(반도유보라) 102동 203~2503, 204~2504
		5	1199(반도유보라) 103동 201~1204
		6	1199(반도유보라) 103동 1301~2503
		7	1199(반도유보라) 104동 101~1601, 102~2002
		8	1199(반도유보라) 104동 103~2503, 104~2504
		9	1199(반도유보라) 105동 101~2501, 102~2502
		10	1199(반도유보라) 105동 203~1306
		11	1199(반도유보라) 105동 1403~2505
		12	1199(반도유보라) 106동 101~1301, 102~1602
		13	1199(반도유보라) 107동 101~2501, 102~2502
		14	1199(반도유보라) 107동 103~906
		15	1199(반도유보라) 107동 1003~2006
		16	1199(반도유보라) 108동 201~2501, 202~2502
		17	1199(반도유보라) 108동 203~2503, 204~2104
		18	1199(반도유보라) 109동 201~2501, 202~2502
	응암5리	제 1 반	1210(과학마을청아람) 101동 101~2001, 102~2002
		2	1210(과학마을청아람) 101동 103~2003, 105~2005
		3	1210(과학마을청아람) 102동 101~807
		4	1210(과학마을청아람) 102동 901~1507
		5	1210(과학마을청아람) 102동 1601~2207
		6	1210(과학마을청아람) 103동 101~2001, 102~2002
		7	1210(과학마을청아람) 103동 103~2003, 305~2005
		8	1210(과학마을청아람) 103동 106~2006, 107~2007
		9	1210(과학마을청아람) 104동 301~1901, 102~1902
		10	1210(과학마을청아람) 104동 103~1903, 305~1905
		11	1210(과학마을청아람) 104동 106~1906, 107~1907
		12	1210(과학마을청아람) 105동 101~2001, 102~2002
		13	1210(과학마을청아람) 105동 103~2003, 105~2005
		14	1210(과학마을청아람) 106동 101~2001, 102~2002
		15	1210(과학마을청아람) 106동 303~2003, 205~2005
		16	1210(과학마을청아람) 107동 101~1901, 102~1902

읍 면	리	반	구 역
구 지 면	응암5리 <신설>	제 17 반	1210(과학마을청아람) 107동 103~1903, 105~1905
		18	1210(과학마을청아람) 107동 106~1906, 107~1907
		19	1210(과학마을청아람) 108동 101~1901, 102~1902
		20	1210(과학마을청아람) 108동 103~1903, 105~1905
		21	1210(과학마을청아람) 109동 101~1801, 102~1802
		22	1210(과학마을청아람) 109동 103~1803, 105~1805
		23	1210(과학마을청아람) 109동 106~1806, 107~1807
	화산리	제 1 반	414~457
		2	458~478
		3	479~697, 724~939
		<변경>	
		4	4~140, 229~316
		<변경>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2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서재리	12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세천리	3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신설> <신설> <신설>	세천리	6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u>세천4리</u> <u>세천5리</u> <u>세천6리</u>
	죽곡리	11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죽곡리	11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매곡리	18	매곡1리	매곡리	18	매곡1리
			매곡2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0리
			매곡12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7리
			매곡18리			매곡18리
	부곡리	1	부곡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11	<u>52</u>	<u>52</u>	11	<u>55</u>	<u>55</u>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옥포면	본리리	<u>4</u>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신설>	본리리	<u>5</u>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u>본리5리</u>
	신당리	1	신당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u>3</u>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신설> <신설>	교항리	<u>5</u>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u>교항4리</u> <u>교항5리</u>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면 소계	9	<u>21</u>	<u>21</u>	9	<u>24</u>	<u>24</u>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현 풍면	상 리	2	상1리 상2리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0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신설> <신설>	중 리	12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중11리 중12리
	하 리	1	하 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신기리	1	신기리	신기리	1	신기리
현 풍면 소계	11	34	34	11	36	36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유가면	읍 리	1	읍 리	읍 리	1	읍 리
	양 리	2	양1리 양2리	양 리	2	양1리 양2리
	용 리	2	용2리 용3리	용 리	2	용2리 용3리
	봉 리	10	봉1리 봉2리 봉3리 봉6리 봉7리 봉8리 <신설> 봉10리 봉11리 봉12리 봉13리	봉 리	11	봉1리 봉2리 봉3리 봉6리 봉7리 봉8리 봉9리 봉10리 봉11리 봉12리 봉13리
	쌍계리	3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쌍계리	3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초곡리	1	초곡리	초곡리	1	초곡리
	상 리	1	상 리	상 리	1	상 리
	금 리	1	금 리	금 리	1	금 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유가면 소계	13	33	33	13	34	34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응암리	<u>4</u>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신설>	응암리	<u>5</u>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u>응암5리</u>
	고봉리	1	고봉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화산리	<u>2</u>	<u>화산1리</u> <u>화산2리</u>	화산리	<u>1</u>	<u>화산리</u> <삭제>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29	29	15	29	29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다사읍	〈신설〉			다사읍	세천4리	제1반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1동 201~2201, 302~2202
						2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2동 201~2301, 302~2302
						3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2동 203~2003, 204~2004
						4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3동 201~1901, 302~1902
						5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4동 201~2201, 302~2202
						6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4동 203~2003, 204~2004
						7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5동 201~2101, 302~2102
						8	1566-3(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105동 203~2203, 304~2204
다사읍	〈신설〉			다사읍	세천5리	제1반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1동 201~2001, 302~2202
						2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1동 203~2203, 304~2204
						3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1동 205~2205, 206~2206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다사읍	<신설>			다사읍	세천5리	제4반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202동 201~1901, 302~1902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5 203동 201~2401, 302~2502 1566-2(세천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단지) 6 203동 303~2203, 204~1904, 205~1405
다사읍	<신설>			다사읍	세천6리	제1반	1587(현대썬앤빌대구) 101동 201~3301, 202~3302 2 1587(현대썬앤빌대구) 101동 203~3203, 204~3204 3 1587(현대썬앤빌대구) 102동 201~1201, 202~1202, 203~1603 4 1587(현대썬앤빌대구) 102동 204~2004, 205~2005 5 1587(현대썬앤빌대구) 103동 101~1501, 102~1502 6 1587(현대썬앤빌대구) 103동 103~1003, 104~1404 7 1587(현대썬앤빌대구) 103동 105~1605, 106~1206
옥포면	<신설>			옥포면	본리5리	제1반	본리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101~3302 2 본리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1동 203~3304 3 본리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101~3302 4 본리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2동 203~3304 5 본리토지구확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101~3302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면	<신설>			옥포면	본리5리	제6반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3동 203~3304
						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101~3302
						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4동 203~3304
						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101~3302
						1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5동 203~3004
						11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1~3302
						12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6동 203~3304
						13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101~3302
						14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7동 203~2904
						15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101~3302
						16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8동 203~3304
						17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101~3302
						18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09동 203~3304
						19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101~3302
						20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달성미진이지비아) 110동 203~3004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신설〉			옥포면	교항4리	제1반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1동 101~1305
						2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2동 101~1505
						3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3동 101~1505
						4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4동 101~1602
						5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5동 101~1302
						6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6동 101~1605
						7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7동 101~1605
						8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8동 101~1405
						9	2892(옥포 이진캐스빌) 809동 201~1405
옥포면	〈신설〉			옥포면	교항5리	제1반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1동 101~1804
						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2동 101~1804
						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3동 101~1804
						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4동 101~1304
						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5동 101~1304
						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6동 101~1404
						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7동 101~1504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신설〉			옥포면	교항5리	제8반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8동 101~1304
						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09동 101~1404
						10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0동 101~1702
						11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1동 201~1804
						12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2동 101~1604
						13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3동 101~1504
						14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4동 201~1802
						15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5동 201~1504
						16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6동 201~1804
						17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7동 201~1804
						18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8동 201~1602
						19	2964(옥포 대성베르힐4단지) 419동 201~1404
옥포면	김홍2리	제1반	791~779	옥포면	김홍2리	제1반	현행과 같음
		2	709~750			2	현행과 같음
		3	748~766			3	현행과 같음
		4	717~729			4	현행과 같음
		5	445~470			5	현행과 같음
		〈신설〉				6	<u>542-687</u>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현풍면	<신설>			현풍면	중11리	제1반	485(일동미라주) 101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2	485(일동미라주) 102동 201~1801, 2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3	485(일동미라주) 103동 201~1801, 202~1802, 203~1803, 204~1804, 205~1805
						4	485(일동미라주) 104동 101~1801, 102~1802, 203~1803, 104~1804, 105~1805
						5	485(일동미라주) 105동 201~2101, 102~2102, 103~2103
						6	485(일동미라주) 105동 204~2104, 105~2105호
						7	485(일동미라주) 106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804, 105~1805
						8	485(일동미라주) 107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9	485(일동미라주) 108동 101~1801, 102~1802, 103~1803, 204~1504, 205~1505
						10	485(일동미라주) 109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205~1505
						11	485(일동미라주) 110동 101~1801, 102~1802, 103~1803, 104~1504, 105~1505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현 풍 면	<신설>			현 풍 면	중12리	제1 반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1~1701, 102~1702, 103~1703
						2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4~1704, 105~1705, 106~1706
						3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4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11~2111, 112~2112, 113~2113
						5	481(천년나무 3단지) 301동 114~2114, 115~2115, 116~2116
						6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4~2104
						7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5~2105, 106~2106, 107~2107, 108~2108
						8	481(천년나무 3단지) 302동 109~1709, 110~1710, 111~1711, 112~1712
						9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1~2101, 102~2102, 103~2103
						10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4~2104, 105~2105, 106~2106
						11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107~2107, 108~2108, 109~2109, 110~2110
						12	481(천년나무 3단지) 303동 311~1711, 112~1712, 113~1713, 114~1714
						13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101~1701, 102~1702, 103~1703, 104~1704
						14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105~1705, 106~1706, 107~1707, 308~1708
						15	481(천년나무 3단지) 304동 209~1709, 210~1710, 211~1711, 212~1712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유가면	<신설>			유가면	봉9리	제1반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1동 101-1001, 102-1002, 103-1003
						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1동 1101-2101, 1102-2102, 1103-2103
						3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2동 101-1101, 102-1102, 103-1103
						4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2동 1201-2201, 1202-2202, 1203-2203
						5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3동 101-1101, 102-1102, 103-1103
						6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3동 1201-2201, 1202-2202, 1203-2203
						7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4동 101-1101, 102-1102, 103-1103
						8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4동 1201-2201, 1202-2202, 1203-2203
						9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5동 201-1801, 202-1802
						10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5동 203-1803, 205-1805
						11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6동 201-1601, 202-1602
						1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6동 103-1603, 105-1605
						13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7동 101-1601, 102-1602
						14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7동 103-1603, 105-1605
						15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8동 101-1601, 102-1602
						16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8동 103-1603, 105-1605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유가면	<신설>			유가면	봉9리	제17반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9동 201-1801, 202-1802
						18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09동 203-1803, 205-1805
						19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0동 101-1601, 102-1602
						20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0동 103-1603, 105-1605
						21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1동 101-1601, 102-1602
						2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1동 103-1603, 105-1605
						23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2동 101-1601, 102-1602
						24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2동 103-1603, 105-1605
						25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3동 101-1001, 102-1002, 103-1003
						26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3동 1101-2001, 1102-2102, 1103-2103
						27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4동 101-1101, 102-1102, 103-1103
						28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4동 1201-2001, 1202-2202, 1203-2203
						29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5동 101-1101, 102-1102, 303-1103
						30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5동 1201-2001, 1202-2202, 1203-2203
						31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6동 101-1101, 102-1102, 103-1103
						32	625(제일풍경채 센트럴) 216동 1201-2001, 1202-2202, 1203-2203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응암2리	제1반	356~372	구지면	응암2리	제1반	현행과 같음
		2	372~392			2	현행과 같음
		3	392~467			3	현행과 같음
		4	467~605			4	현행과 같음
		5	605~1217 (1178제외)			5	605~1217 (1178, 1199, 1210 제외)
구지면	응암3리	제1반	867~918	구지면	<삭제> ※ 응암3리 1반(867~918)은 응암2리 5반으로 편입		
구지면	<신설>			구지면	응암3리	제1반	1199(반도유보라) 101동 201~1801, 202~2302, 203~2503
						2	1199(반도유보라) 101동 204~2504, 205~2305
						3	1199(반도유보라) 102동 201~2501, 202~2502
						4	1199(반도유보라) 102동 203~2503, 204~2504
						5	1199(반도유보라) 103동 201~1204
						6	1199(반도유보라) 103동 1301~2503
						7	1199(반도유보라) 104동 101~1601, 102~2002
						8	1199(반도유보라) 104동 103~2503, 104~2504
						9	1199(반도유보라) 105동 101~2501, 102~2502
						10	1199(반도유보라) 105동 203~1306
						11	1199(반도유보라) 105동 1403~250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신설〉			구지면	응암3리	제12반	1199(반도유보라) 106동 101~1301, 102~1602
						13	1199(반도유보라) 107동 101~2501, 102~2502
						14	1199(반도유보라) 107동 103~906
						15	1199(반도유보라) 107동 1003~2006
						16	1199(반도유보라) 108동 201~2501, 202~2502
						17	1199(반도유보라) 108동 203~2503, 204~2104
						18	1199(반도유보라) 109동 201~2501, 202~2502
구지면	〈신설〉			구지면	응암5리	제1반	1210(과학마을청아람) 101동 101~2001, 102~2002
						2	1210(과학마을청아람) 101동 103~2003, 105~2005
						3	1210(과학마을청아람) 102동 101~807
						4	1210(과학마을청아람) 102동 901~1507
						5	1210(과학마을청아람) 102동 1601~2207
						6	1210(과학마을청아람) 103동 101~2001, 102~2002
						7	1210(과학마을청아람) 103동 103~2003, 305~2005
						8	1210(과학마을청아람) 103동 106~2006, 107~2007
						9	1210(과학마을청아람) 104동 301~1901, 102~1902
						10	1210(과학마을청아람) 104동 103~1903, 305~190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신설>			구지면	응암5리	제11반	1210(과학마을청아람) 104동 106~1906, 107~1907
						12	1210(과학마을청아람) 105동 101~2001, 102~2002
						13	1210(과학마을청아람) 105동 103~2003, 105~2005
						14	1210(과학마을청아람) 106동 101~2001, 102~2002
						15	1210(과학마을청아람) 106동 303~2003, 205~2005
						16	1210(과학마을청아람) 107동 101~1901, 102~1902
						17	1210(과학마을청아람) 107동 103~1903, 105~1905
						18	1210(과학마을청아람) 107동 106~1906, 107~1907
						19	1210(과학마을청아람) 108동 101~1901, 102~1902
						20	1210(과학마을청아람) 108동 103~1903, 105~1905
						21	1210(과학마을청아람) 109동 101~1801, 102~1802
						22	1210(과학마을청아람) 109동 103~1803, 105~1805
						23	1210(과학마을청아람) 109동 106~1806, 107~1807
구지면	<u>화산1리</u>	제1반	414~457	구지면	<u>화산리</u>	1	현행과 같음
		2	458~478			2	현행과 같음
		3	<u>479~697</u>			3	<u>479~697, 724~939</u>
		4	<u>229~316</u>			4	<u>4~140, 229~316</u>
구지면	<u>화산2리</u>	제1반	4~140		<삭제>	<삭제>	
		2	<u>724~939</u>			<삭제>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달성군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 기반강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명시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라.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마.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5.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안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안 제9조 성별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등
총 19개 조문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군수가 해당 기관의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

다) 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을 담당하

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분석평가 교육)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석평가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한 효율적, 전문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단체 등에 분석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엇어가족부 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제안이유

-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가족친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사업
 -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사업
 - 가족친화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5. 관계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민 및 달성군 소재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가족친화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사항, 안 제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하는데 기여한 군 소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 등 총 9개 조문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주민 및 달성군 소재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

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사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사업

③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그 기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하는데 기여한 군 소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장)
3. 개정이유

○ 달성군의 관광명소인 비슬산과 화원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교통편의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초기 도입 시의 노선에 대한 변경 및 이용료 현실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달성군민의 이용료 감면 등이 요구되어 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관광객 이용시설 이용료 조정 및 감면대상 추가(안 제5조)
- 나.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 노선·구간 변경(안 제4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명소인 비슬산과 화원유원지 등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 교통편의 제공과 당초 노선에 대한 변경 및 이용료 현실화,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군민 등의 이용료 감면으로 다양한 계층이 교통편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의 명확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에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달성군민,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안 제8조 제2항에는 기존 순환형을 폐지하고 상행노선에 약초원, 하행노선에 편백나무 숲을 추가하여 상·하행 편도형으로 노선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달성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노선은 화원유원지 주차장(이하 본항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초원, 동물원을 지나 전망대까지를 상행노선으로 하고, 전망대로부터 편백나무숲, 수변을 지나 주차장까지를 하행노선으로 하되, 그 운행구간은 군수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1제2호의 구분란 중 “순환형”을 “편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같은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용료

1.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구 분		요 금
편도	소인	6,000
	대인	10,000
· 부가세 10% 포함		

2.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구 분		요 금
편도	소인	3,000
	대인	5,000
· 부가세 10% 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달성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 노선·구간) ① (생략) ② 화원유원지 이용시설의 운행노선은 화원유원지 주차장(이하 본항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시·종점으로 하여 화원유원지 내 일정구간을 순환하는 것으로 하되, 그 구간은 군수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운행 노선·구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의 운행노선은 화원유원지 주차장(이하 본항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약초원, 동물원을 지나 전망대까지를 상행노선으로 하고, 전망대로부터 편백나무숲, 수변을 지나 주차장까지를 하행노선으로 하되, 그 운행구간은 군수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1] 이용료 2. 회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요금</th></tr><tr><td rowspan="2">순환형</td><td>소인</td><td>3,000</td></tr><tr><td>대인</td><td>5,000</td></tr><tr><td colspan="3">· 부가세 10% 포함</td></tr></table>	구분		요금	순환형	소인	3,000	대인	5,000	· 부가세 10% 포함			[별표1] 이용료 2. 회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단위 : 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요금</th></tr><tr><td rowspan="2">편도</td><td>소인</td><td>3,000</td></tr><tr><td>대인</td><td>5,000</td></tr><tr><td colspan="3">· 부가세 10% 포함</td></tr></table>	구분		요금	편도	소인	3,000	대인	5,000	· 부가세 10% 포함		
구분		요금																					
순환형	소인	3,000																					
	대인	5,000																					
· 부가세 10% 포함																							
구분		요금																					
편도	소인	3,000																					
	대인	5,000																					
· 부가세 10% 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관광과장)

3. 개정이유

- 달성군의 관광명소인 사문진 수상이용시설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유람선, 쾌속선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통일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이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자 추가 명시
- 나. 사문진 유람선과 쾌속선의 이용료 통일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사문진 역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수상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람선과 쾌속선 이용료의 통일 및 일부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으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수상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의 명확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이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달성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감면과 안 제6조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수상이용시설을 번갈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유람선과 소형보트의 이용요금 최고금액을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이용료 면제”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제6조 제3호 중 “필요하다고”를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로 하며,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달성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요 금
유람선 · 소형보트	소인	10,000이하
	대인	15,000이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신설> [별표1] 이용료 (단위 : 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요금</th></tr><tr><td rowspan="2">유람선</td><td>소인</td><td>14,000이하</td></tr><tr><td>대인</td><td>20,000이하</td></tr><tr><td rowspan="2">소형보트</td><td>소인</td><td>7,000이하</td></tr><tr><td>대인</td><td>20,000이하</td></tr></table> - 유람선의 경우 20인 이상 단체에 한해 요금의 20% 할인 - 부가세 10% 포함	구분		요금	유람선	소인	14,000이하	대인	20,000이하	소형보트	소인	7,000이하	대인	20,000이하	제6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달성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이용료 (단위 : 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요금</th></tr><tr><td rowspan="2">유람선 · 소형보트</td><td>소인</td><td>10,000이하</td></tr><tr><td>대인</td><td>15,000이하</td></tr></table>	구분		요금	유람선 · 소형보트	소인	10,000이하	대인	15,000이하
구분		요금																				
유람선	소인	14,000이하																				
	대인	20,000이하																				
소형보트	소인	7,000이하																				
	대인	20,000이하																				
구분		요금																				
유람선 · 소형보트	소인	10,000이하																				
	대인	15,000이하																				

□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가야문화권 협의회 설립절차 이행(규약고시)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7년 3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이행이유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의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하고,
- 2016년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남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협의회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 나. 협의회 의장단 구성 및 선출(안 제4조)
- 다. 협의회 경비부담사항(안 제8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II. 검토의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 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운영규약안은 가야문화권 시, 군간 역량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법적지위를 부여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회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의하여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 고시코자 함이며,
-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 목적, 기능, 구성, 안 제5조 회의, 안 제7조 사무국, 안 제8조 경비부담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운영규약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운영규약 안 1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안)

제 1 조 (협의회 목적)

본 규약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①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 ②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③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 ④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 ⑤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제 3 조 (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 지자체는 거창군 · 고성군 · 고령군 · 구례군 · 광양시 · 남원시 · 달성군 · 산청군 · 성주군 · 순천시 · 의령군 · 장수군 · 창녕군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함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② 협의회 회원은 지자체의 시장·군수로 구성하며,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또한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 ③ 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추가 영입은 협의회 회의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추가 영입하게 한다.

제 4 조 (의장단 구성 및 선출)

- ① 의장은 1명으로 한다.
- ② 의장 선출은 호선한다.
-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회 의)

-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연 2 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실시하기로 한다.
- ③ 협의회 개최지는 시 · 군별 순회(가나다 --- 순) 한다.
- ④ 협의회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 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 무 국)

- ①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1. 사무지원은 시 · 군의 해당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 2. 협의회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사무국은 의장 시 · 군에 둔다.
 - 4. 협의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 · 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별 소속 실·과장

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부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 8 조 (경비 부담)

- ① 본 협의회는 재정은 다음과 같이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협의회 시·군별 부담금
 2. 기타 수입금
 3.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한다.
- ② 본 협의회는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는 지출은 회의 안건 의결에 따라 협의회 운영경비, 워크숍 및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를 사용하며, 협의회 시·군의 재난 발생시 의장의 판단으로 위문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결산보고는 당해 회의 개시전 기간까지 사용한 재정사항을 결산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 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